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이 보험금 지급에 미칠 영향

송윤아 연구위원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9월 30일 시행 예정임. 특별법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보험금 지급지체가 가능한 합법적인 사유가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것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짐.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 · 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오는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종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법정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벌금형 상한이 상향된 정도에 불과함 ²⁾
 - 보험사기죄에 대해 기존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서 벌금 상한을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다소 강화함.
 - 상습범과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이는 기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분리하여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¹⁾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9월 30일 발효 예정임.

²⁾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함(특별법 제2조 제1항).

- 특별법은 보험금 지급보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대한 범위 확대 (현행 보험약관 규정 대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임.³⁾
 - 「상법」제658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함.
 - 다만, 현행 생명・실손・질병상해 보험약관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의 경우
 - 보험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거절・삭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⁴⁾
 - 더불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합법적인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정되는 사유가 다음과 같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것보다 확대됨.5)
 -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 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6)
 - 기타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 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와 함께, 특별법은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함.
 - 특별법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⁷⁾

³⁾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법 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시행 예정임.

⁴⁾ 특별법 제5조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제2조.

⁶⁾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특별법 제6조 제1항).

⁷⁾ 특별법 제15조.

■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의 명문화 및 확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현행 약관상으로 보험금 지급 보류가 가능하나 민원 발생 또는 여론 악화 등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관련 조사 및 수사 중인 경우에도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후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조사기간 및 재판기간 중에 보험금을 소진해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려서 화수에 어려움을 겪음.
-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는 제한적임.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계약자 등과의 쌍무관계에서 약관규 정을 근거로 계약자 등의 동의하에 보험사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관계자의 진술서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⁸⁾. 이로써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 여부를 오판하여 수사의뢰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kiqi

^{8) 「}보험업법」제162조.